KOSHA GUIDE

C - 08 - 2015

- (2) 강재 작업발판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성질 및 강도는 방호장치 의무 안전인증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-54호)에 적합하거나 그와 동등이상 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- (3) 이 지침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사항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(고용 노동부고시 제2013-54호) 중 제36조(성능기준 및 시험방법)의 규정에 정하 는 바에 의한다.

6. 작업발판 설치 및 해체 시 주의사항

- (1)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근로자가 작업발판 고정용 못, 철선 및 볼트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발판을 해체 시 그 주변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킨다.
- (5)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손잡이를 해체하는 경우에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6) 안전난간에 관련된 제반 규정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한다.

7. 작업발판 사용 시 준수사항

(1) 작업발판 사용 시『작업발판 점검계획』을 수립하여 당해 작업 시작 전에 작업 발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〈부록 4〉와 같이 "작업발판 점검 결과표" 를 당해 작업장에 게시하고 작업발판 주변에 지적된 내용을 표시하여 작업